



## 가. 관련 판례

민법 제 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판결 등 참조).

## 나. 혼인파탄 사유(민법 제 840 조 제 3 호 및 제 6 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관계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폭행,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혼인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어린 사건본인을 위해 신청인의 폭력을 참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

였지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폭력은 점차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21. 2. 16.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또다시 피신청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늑골과 손목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을 제12호증 진단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력을 참고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13호증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문자메시지, 을 제14호증 피신청인이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생활 동안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과 가정에는 철저히 무관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과 피신청인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여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거주하던 집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일이 잦았고, 사건본인의 명의 어린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험을 해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을 제15호증 전기요금 미납 문자메시지, 을 제16호증 사건본인 보험료 미납 문자메시지).

그런데도 신청인은 가정보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핸드폰 게임에 중독되어 매달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였고, 게임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도 사건본인과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행, 경제적 무능력,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인해 혼인생활 동안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3. 6. 13.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신청인은 별거 후 지금까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혼인생활 동안 피신청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신청인의 경제적인 무능력,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신청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신청인과의 허울뿐인 혼인관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합니다.

## 3. 재산분할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거 이후, 재산분할은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원만한 조정의 성립을 위하여 연금을 포함한 일체 재산은 각자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4. 사건본인에 관하여

###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무관심하였고, 현재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이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와 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하시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본인은 아빠인 신청인을 무서워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의 부모이자 사건본인의 조부모를 만나는 것이 “공포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당일 면접교섭으로 진행하되, 사건본인과 조부모와의 만남은 가급적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사건본인이 성장을 하고 신청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숙박면접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 나. 양육비에 관하여

현재 사건본인은 2014년생으로 만 9세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별거 첫 달에 양육비로 90만 원을 지급한 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본인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어서 언어 인지 연구소에 다니며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을 제17호증 사건본인 검사 결과지, 을 제18호증 언어 인지 연구소 수업 관련 메시지). 이에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은 양육비 이외에 경계성 지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매달 지출하고 있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극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해 주길 바랍니다.

### 5. 결론



위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어 이 사건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            |                          |
|------------|--------------------------|
| 1. 을 제12호증 | 진단서                      |
| 1. 을 제13호증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문자메시지         |
| 1. 을 제14호증 | 피신청인이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 1. 을 제15호증 | 전기요금 미납 문자메시             |
| 1. 을 제16호증 | 사건본인 보험료 미납 문자메시지        |
| 1. 을 제17호증 | 사건본인 검사 결과지              |
| 1. 을 제18호증 | 사건본인 언어 인지 연구소 수업 관련 메시지 |

2023. 11. .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 수 학

담당변호사 김 경 태

담당변호사 김 희 재

##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1조정) (가) 귀중

